KOSHA GUIDE

C - 48 - 2022

- (라) "건설용 리프트"(이하 "리프트"라 한다)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(운반 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)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 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 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4. 차량계 건설기계

4.1 일반안전사항

4.1.1 공통사항

- (1)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, 운행경로,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
- (2) 기계별 주용도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(3) 전도,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, 갓길의 붕괴방지,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5) 폭풍, 폭우,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6)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.
- (7) 기계의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8)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